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68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8. 30 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, 예·결산 심사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개정 내용

- 가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(1년)를 규정함 (안 제7조의2제2항)
- 나.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
(안 제7조의2제3항, 안 제7조의3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- 나. 기타
 - 1) 개정조례안: 붙임
 - 2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, 그 재임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.

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의3제2항 중 “임기만료 전 사임한”을 “보임된”으로, “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”을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의2(예산결산특별위원회)</p> <p>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, 그 재임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<u>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제7조의3(윤리특별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임기만료 전 사임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7조의3(윤리특별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보임된</u> ----- ----- <u>전임자 임기의 남은</u> <u>기간</u>-----.</p>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